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278
------------	------

2020년 4월 23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2월 5일, 이광호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4월 2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광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 고령자 등의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위험성 등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서울시의 경우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 체험시설 대부분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어린이, 고령자 등이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정의함(안 제2조)
-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 17 ~ 2019. 2.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수정동의

- “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 할수 있다”에 근거하여 제정 되는 조례안으로
-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하는 교통안전 체험 시설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대부분의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자치구청장 관리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무를 시장에 게만 부여하기 보다는 자치구청별로 교통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하고자 함

## 4. 검토보고 요지

###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신설(안 제1조~제2조 관련)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sup>1)</sup>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강화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sup>2)</sup>에 따른 총 15개의 교통안전체험장<sup>3)</sup>이 있으나, 주로 자전거 위주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자료(서울시)

연 도	총 사고건수	교 통 약 자	
		고령자(65세이상)	어린이(12세이하)
2016년	6,734	5,219	1,515
2017년	6,823	5,357	1,466
2018년	7,092	5,761	1,331

※ 최근3년간 총사고건수는 **연평균2.6%증가**

-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서는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됨
- 3)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 현황 : 총 15개소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체험시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5)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의 근거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3조 관련)

-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조성 등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많은 교통약자들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제3항에서 “시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권역’에

구 분	총 계	직 영	위 탁
개 소	15	4	11
해당 자치구 및 기관	-	동대문, 금천, 서초, 한강사업본부	성동, 중랑, 성북, 노원, 양청, 구로, 강서, 영등포, 관악, 송파, 강동

※ 상기 표기된 자치구 및 기관당 1개소씩 운영

- 4)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
- 5)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됨

대한 지리적, 지역적 정의<sup>6)</sup>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권역의 범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sup>7)</sup>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관련법에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전거 안전 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무를 자치구청장에게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임

#### ■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정보공개, 기능 및 설치기준(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

- 안 제4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민에게 홍보 안내하여 시설의 이용률과 운영현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sup>8)</sup>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 시장이 교육대상자의 유형을 고려해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

- 
- 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를 "권역"으로 규정  
7)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시장이 권역별로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을 규정하고, 소방재난본부 자체적으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민안전체험과 조성을 추진중  
8)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및 방법(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는 것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 및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관련)

- 안 제6조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현재 교통안전 체험시설과 유사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경우 전체 15개소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중 11개소가 위탁운영<sup>9)</sup>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시설을 직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탁운영 방안 마련은 필요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7조는 시장이 자치구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례<sup>10)</sup>를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9) 각주3)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 현황” 참조

10) 서울시에서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0~'17년까지 2,532백만원을 자치구에 지원함

※ 관련근거 : 요구자료 1580번

##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관련)

- 안 제8조는 시장 등이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운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11)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시설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관내 교육기관, 노인 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동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 기타 검토사항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시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 이후 별도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설치·운영 될 수 있을 것임

### 【 각 시설별 교육·체험내용 및 설치근거 】

구 분	시민안전체험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교통안전체험관
교육 체 험 내 용	지진, 태풍, 화재, 버스 교통사고, 지하철 화재 체험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자전거 운전 포함)
설 치 근 거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의2
운 영 현 황	2개소(시 운영)	15개소 : 시1, 자치구 14	없음

11) 각주4) 참고



- 각 시설별로 개별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많은 시민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져 교육 및 체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으나, 시설별로 기능과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있고 체험 및 교육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관련법과 조례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유사한 기능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사례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 뿐만 아니라 자치구청장도 함께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교통안전 체험시설 정의의 약칭규정을 변경(안 제2조)
-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책무의 주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으로 수정 (안 제3조)
-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의 주체를 ‘시장’에서 ‘시장 등’으로 수정 (안 제4조제1항)
-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 교통안전 체험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주최를 ‘시장’에서 ‘시장 등’으로 수정(안 제6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78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유사한 기능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사례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 뿐만 아니라 자치구청장도 함께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 2. 주요 골자

- 가. 교통안전 체험시설 정의의 약칭규정을 변경(안 제2조)
- 나.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책무의 주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으로 수정(안 제3조)
- 다.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주체를 '시장'에서 '시장 등'으로 수정(안 제4조제1항)
- 라.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마. 교통안전 체험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주최를 '시장'에서 '시장 등'으로 수정(안 제6조)

### **3. 참고 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의 제목을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은”을 각각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 및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을 “시장 등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시장은”을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조 제2항 중 “시장은”을 각각 “시장 등은”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 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u>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u>이----- ----- -----</p>
<p>제3조(<u>시장의</u> 책무) ① <u>시장은</u>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u>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은</u>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u>시장 등의</u> 책무) ① <u>시장 등은</u> ----- ----- ----- ----- -----</p> <p>② <u>시장</u> <u>등은</u></p> <p>-----</p> <p>③ <u>시장</u> <u>등은</u></p> <p>----- ----- -----</p>
<p>제4조(정보공개) ① <u>시장은</u>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보공개) ① <u>시장 등은</u> ----- ----- -----</p> <p>② (<u>제정안과 같음</u>)</p>
<p>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p> <p>② <u>시장 및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u></p>	<p>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① (<u>제정안과 같음</u>)</p> <p>② <u>시장</u> <u>등은</u></p>

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p><u>라 한다</u>)은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③ <u>시장</u>은 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위탁운영 등) ① <u>시장</u>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u>시장</u>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 ----- ----- ----- -----</p> <p>③ <u>시장</u> <u>등</u>은</p> <p>----- ----- ----- ----- -----</p> <p>제6조(위탁운영 등) ① <u>시장</u> <u>등</u>은</p> <p>----- ----- ----- ----- -----</p> <p>② <u>시장</u> <u>등</u>은</p> <p>----- ----- -----</p> <p>③ (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

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② 시장 등은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시장 등은 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구청장이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